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27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0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수입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이 반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금품·향응을 관계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영업자에 대한 처분조항을 강화하여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정밀검사 대상 추가(안 [별표9])

- 1) 금품이나 향응을 관계공무원에게 제공하여 다른 영업자의 행정정보를 요구하여 통관편의를 누리는 사건 발생
- 2) 동 영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

밀검사 실시

- 3) 정밀검사를 회피하는 영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확보

#### 나. 동일사·동일수입식품의 기준 강화(안 [별표10])

- 1) 통관편의를 위해 동일사·동일수입식품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 발생
- 2) 동일사·동일수입식품 기준에 수입자 및 유효기간 추가하여 규정을 강화
- 3) 동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보다 더 안전한 수입식품이 반입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다.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13])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밀검사를 회피하는 등 수입신고 및 검사 과정에서 취약요인이 발생
- 2)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할 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강화
- 3) 영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

###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수입식품정책과)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157, 팩스 : 043-719-21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우수수입자”를 “우수영업자”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또는 식약처장이 우수영업자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일반수입자”를 “일반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별관리수입자”를 “특별관리영업자”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별표 8 제2호저목과 처목과 별표 8 제3호라목을 위반한 자

제31조제1항제4호 중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을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및 정밀 검사 대상”으로 한다.

제4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식품위생법」 제22조제3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제6항에 따른 증표로 본다.

별표 8 제2호에 저목과 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등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검사기관에 수입식품등의 신고업무와 관련된 검사를 의뢰할 때 검사수수료 외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른 영업자의 수입신고서의 열람 또는 그 사본·복제물의 제공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8 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른 영업자의 수입신고서의 열람 또는 그 사본·복제물의 제공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9 제2호다목3) 중 “수입식품등 : 별표 10 제3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실시한다.”를 “수입식품등”으로 하고, 같은 세호에 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별표 10 제3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실시한다.

나) 별표 10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20회에서 30회까지 연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별표 9 제2호다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입신고를 한 자(수입신고 대행업자를 포함)가 수입식품등 수입신고서를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신고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수입 신고를 한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별표 9 제3호다목5)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10 제4호나목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이 같고 같은 선박으로 같은 입항일자에 별크로 수입되어 구분되지 아니한 농·임산물 이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를 받고 통관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업허가(등록·신고)기관의 장에 통보하고 부적합

처리를 하여야 한다.

별표 10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별표 8 제2호의 저목과 처목 및 별표8 제3호 라목을 위반한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별표 10 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식품(농산물·임산물·수산물은 제외한다) 또는 식품첨가물: 수입자·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품명·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 최초로 수입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재수입하는 것, 다만, 포도주의 경우는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품명·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재수입하는 것(제품명에 빈티지(제조연도 또는 숙성년도) 및 알코올 도수가 다른 경우도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

나. 농산물·임산물·수산물: 수입자·생산국·품명·수출업소 및 포장장소(수산물은 제외한다)가 같은 것으로서 최초로 수입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재수입하는 것

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 수입자·제조국·해외제조업소·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로 수입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재수입하는 것

라. 건강기능식품: 수입자·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품명·제조방법 원료 및 배합비율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로 수입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재수입하는 것

마. 축산물: 식육·원유·식용란은 수입자·생산국·품목·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로 수입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

년 이내에 재수입하는 것을, 그 외의 축산물은 수입자·생산국·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제품명·가공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로 수입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재수입하는 것

별표 13 I. 일반기준 제9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입식품등을 수입만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하였으며, 고의성이 없는 경우

별표 13 II. 개별기준 제2호나목에 16)과 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별표 8 제2호저목을 위반한 경우	법 제 29 조	영업등록 취소		
17) 별표 8 제2호처목을 위반한 경우		2개월	영업등록 취소	

별표 13 II. 개별기준 제2호다목1)의 행정처분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8 제3호나목을 위반한 경우	법 제 29 조	영업등록 취소		
-----------------------	-------------	------------	--	--

별표 13 II. 개별기준 제3호다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표 8 제3호라목을 위반한 경우	법 제 29 조	2개월	영업등록 취소	
-----------------------	-------------	-----	------------	--

별표 13 II. 개별기준 제3호나목2)부터 4)의 행정처분기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용도, 원재료 및 제조일자(유통기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법 제 29 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등록 취소
3)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여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등록 취소
4)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등록 취소

별지 제17호, 제21호 및 제2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밀검사 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다목3) 및 별표 10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시행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 된 수입식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3조(동일사 동일수입식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시행규칙 시행 이후 선적된 수입식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별지서식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영업등록, 영업변경 등록, 영업 변경신고, 수입신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제21호 및 제25호 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행정처분 등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6조(영업자의 구분 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u>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차등 관리할 수 있다.</u></p> <p>1. <u>우수수입자</u>: 법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2. <u>일반수입자</u>: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p> <p>3. <u>특별관리수입자</u>: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나. (생략)</p> <p><u>&lt;신설&gt;</u></p> <p>② (생략)</p> <p>제31조(조건부 수입 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p>	<p>제26조(영업자의 구분 관리) ① ----- ----- <u>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u>----- ----- -----</p> <p>1. <u>우수영업자</u>: ----- ----- -----제외한다) 또는 식약처장이 우수영업자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p> <p>2. <u>일반영업자</u>: ----- -----</p> <p>3. <u>특별관리영업자</u>: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별표 8 제2호저목과 처목 및 별표 8 제3호라목을 위반한 자</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1조(조건부 수입 검사) ① --- ----- ----- ----- -----</p>

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 3. (생략)

4.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② ~ ④ (생략)

제44조(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① ~ ⑥ (생략)

<신설>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및 정밀검사 대상-----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제6항에 따른 증표로 본다.

## 영업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보관시설의 소재지	영업장 면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4.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세창고·보관시설에 대한 「관세법」·「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허·신고·허가에 관한 서류(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5.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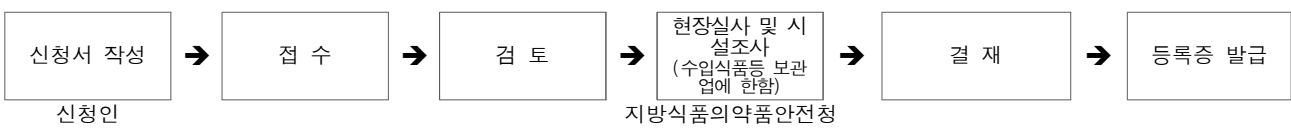
위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등록과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 등록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처리절차



<p>신청인 제출서류</p>	<p>1.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  나.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라.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세창고·보관시설에 대한 「관세법」·「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허·신고·허가에 관한 서류(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한다)  마.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p> <p>2.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증  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수수료  소재지 변경: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9,300원  (수입인지)  영업자 성명  변경: 수수료  면제</p>
<p>담당 공무원 확인사항</p>	<p>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p>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위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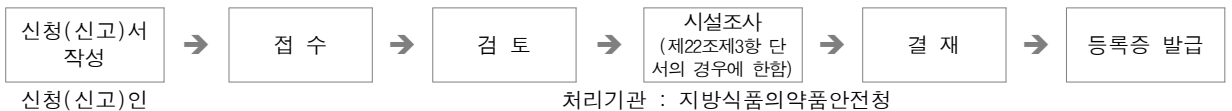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등록을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가. 영업소 소재지
2.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영업장의 면적(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3.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적고 등록증은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영업등록사항 [ ] 변경등록신청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변경등록 : 3일 변경신고 : 3일
신청(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영업의 종류	등록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보관시설 소재지				
영업장 면적				
변경사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뒤쪽 참조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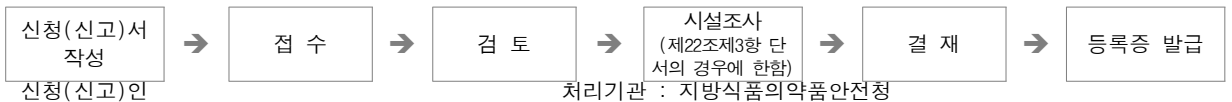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p>신청인 제출서류</p>	<p>1.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  나.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라.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세창고·보관시설에 대한 「관세법」·「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허·신고·허가에 관한 서류(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한다)  마.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p> <p>2.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증  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수수료</p> <p>소재지 변경: 26,500원</p> <p>소재지 외 변경: 9,300원 (수입인지)</p> <p>영업자 성명 변경: 수수료 면제</p>
<p>담당 공무원 확인사항</p>	<p>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p>	

유의사항

1. 등록을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가. 영업소 소재지
2.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영업장의 면적(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3.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적고 등록증은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4쪽 중 제1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신고시기	A: 본신고 [ ] B: 사전신고 [ ]	접수번호		접수일자	년 월 일
신고제품구분	1: 농·임산물 [ ] 2: 수산물 [ ] 3: 축산물 [ ] 4: 가공식품 [ ] 5: 식품첨가물 [ ] 6: 기구 또는 용기·포장 [ ] 7: 건강기능식품 [ ]	처리기간	식품등·건강기능식품: 서류검사 2일, 현장검사 3일, 무작위표본검사 5일, 정밀검사 10일 (진균수시험대상 10일, 식품조사처리식품 14일, 가온보존시험대상 15일) 축산물: 서류검사 3일, 현장검사 5일, 무작위표본검사·정밀검사 18일		
수입신고인 (수입화주)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업종		허가(등록·신고)번호		
	주소				
제조 가공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업종		허가(등록·신고)번호		
	주소				
수입신고 대행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등록번호		
	주소				
제품명	한글명		유형 (축·수산물만 해당함)		
총수량 (단위: )	순증량 kg		과세가격 (단위: US\$)		
총항수	항번	화물관리번호		B/L번호	
세번부호 (HSK 번호)	용도		성분·재질 및 제조공정: 제2쪽에 기재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생산국(제조국)	수출국				
해외제조업소 [축산물:해외작업장 (포장처리·가공장)]	등록번호	회사명			
도축장 [축산물만 해당]	등록번호	회사명			
수출업소	주소		회사명		
포장장소	등록번호	주소			
선적일	년 월 일	선적항			
입항일	년 월 일	선명(기명)		국내도착항	
검사(반입)장소	보관업 등록번호		상호 (☎ - - )		
			성명		
			주소		
반입일	년 월 일				
검사기관					
이력번호(수입쇠고기만 해당함)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여부	표시함[ ], 표시하지 않음[ ], 해당 없음[ ]				
유기식품등 여부	예[ ], 아니오[ ]				
할랄인증 식품 등 해당 여부	예[ ], 아니오[ ]				
식품조사처리 여부	완제품 조사[ ], 원료조사[ ], 해당 없음[ ]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식품 여부	예[ ], 아니오[ ]				
고열량·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번호	우수수입업소 등록번호				

No.	성분·재질코드	원재료명칭 또는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명칭	배합비율 (%)	No.	성분·재질코드	원재료명칭 또는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명칭	배합비율 (%)
1			·	11			·
2			·	12			·
3			·	13			·
4			·	14			·
5			·	15			·
6			·	16			·
7			·	17			·
8			·	18			·
9			·	19			·
10			·	20			·

제조·가공  
공정

### 신고인 제출서류

-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합니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합니다)
- 다.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라.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제29조에 따른 유통기한 연장사유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합니다)
-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 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법 제37조 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아.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자. 할랄인증 식품 또는 할랄인증 축산물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식품 또는 할랄인증 축산물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차.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외에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유전자재조합 안전성 관련 승인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유의사항

- 가.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첨부서류를 이미지파일(PDF파일 등)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나. 제2쪽 원재료명칭은 제품에 함유된 식품 등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하며, 모든 원재료명을 적되 제품유형의 분류를 위하여 주원료의 성분배합비율과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그 사용량 또는 비율을 적어야 하며,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식품 등 및 식품첨가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코드와 명칭을 적습니다.
- 다. 검사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시험수수료액표에 따릅니다.
- 라. 유통기한(또는 제조일자)이 여러 개인 제품을 신고하는 경우, 제1쪽 "유통기한"란에는 가장 빠른 유통기한(또는 제조일자)을 적고, 제3쪽에 모든 유통기한(또는 제조일자)별로 각각의 중량, 과세가격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다만, 축산물 중 식육·원유·식용란은 제외합니다)
- 마. 동일모션으로 동일입항일자에 수입한 동일제품은 1건으로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축·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입 당시의 선하증권(B/L NO)단위로 하여야 합니다.
- 바. "수출회사"는 제품을 실제로 수출하는 회사명 및 소재지를 신고하여야 하며, "포장장소"는 해외제조업소의 소재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처리절차

